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3월 31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3. 1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105호)

나. 회부일자: 2023. 3. 20.

다. 상정일자: 제2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3. 27.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가. 제안이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변경(안 제2조)

○ 지방공무원의 총수 : 1,586명 → 1,592명 (+6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6명 → 42명 (+6명)

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변경(안 제3조 관련 별표 2)

○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비율

- 7급 → 34.5% 이내 (증 0.5%)
- 전문경력관 → 0.5% 이내 (감 0.5%)

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변경(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정원 총계 : 1,586명 → 1,592명 (+6명)
- 일반직 계 : 1,576명 → 1,582명 (+6명)
 - 6급 이하 : 1,496명 → 1,502명 (+6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와 제24조제1항¹⁾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필요한 인력 확충(일반임기제 7급²⁾)을 위해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정원의 총수)의 지방공무원 총수를 1,586명에서 1,592명으로 6명 증원함(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6명 → 42명)

- 별표 2의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변경
 - 7급 → 34.5% 이내(증 0.5%)
 - 전문경력관 → 0.5% 이내 (감 0.5%)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 인력 확충을 위해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3월 31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3. 1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106호)

나. 회부일자: 2023. 3. 20.

다. 상정일자: 제2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3. 27.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가. 제안이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2023.1.1.)에 따라, 성북구 답례품 선정 및 위원회 구성 등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 목적 (안 제1조)

나.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제11조)

다. 고향사랑기금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 18489호, 2021.10.19. 공포, 2023.1.1. 시행)³⁾이 제정 되었음.

3) 고향사랑 기부금

- 1. 개요 :**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고, 기부자에게는 그만큼 세금 감면(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
 - 2021년 9월 28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통과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기금(고향사랑기금)으로 관리하며, 주민복지 증진 등의 한정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음.
- 2. 기부 방법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기부. 기부할 지역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 후 기부하기를 실행하면 '전자납부번호'가 생성되며, 위택스의 지방세 조회/납부 화면으로 이동되어 납부할 수 있음.
- 3. 기부의 제한 :** 주민등록등본 상 자신의 거주지에 해당되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서울시 성북구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 본청'과 '성북구'에는 기부할 수 없음. 단 서울시 내 다른 구에는 기부할 수 있음.
 -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이해관계가 얽여 있는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없음.
 -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기부할 수 없음.
 - 기부는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불가.
 - 연간 최대 기부 한도는 500만 원.
- 4. 기부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 10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00%, 초과분은 16.5%의 금액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지급되고, 답례품몰에서 포인트 이내의 답례품을 주문할 수 있음.

○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고향에 대한 건강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성북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지급(법 제9조제2항)4),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법 제11조제3항)5)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4)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답례품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2조에서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서울시 자치구 중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낮은 성북구에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023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3월 31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3. 1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107호)

나. 회부일자: 2023. 3. 20.

다. 상정일자: 제2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3. 27.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가. 제안이유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2023년 성북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3. 5. ~ 11.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나. 위탁내용 : 2023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 및 관리

○ 2023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위한 홍보

○ 성북 시티투어버스 사업계획(코스개발 등) 수립을 통한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수행인력, 버스임차, 관광편의 등
- 기타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다. 위탁비용 : 총117,000천원

라. 수탁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거 여행업에 등록된 자
- 공고일 현재 신청인의 주사무소가 경기도 및 서울시 소재인 자

마. 위탁체 선정 :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동의안은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
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관광만족도를 증진 시키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
례」 제5조제1항6)에 따라 2023 성북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7)에

6) 제5조(관광진흥업무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관광진흥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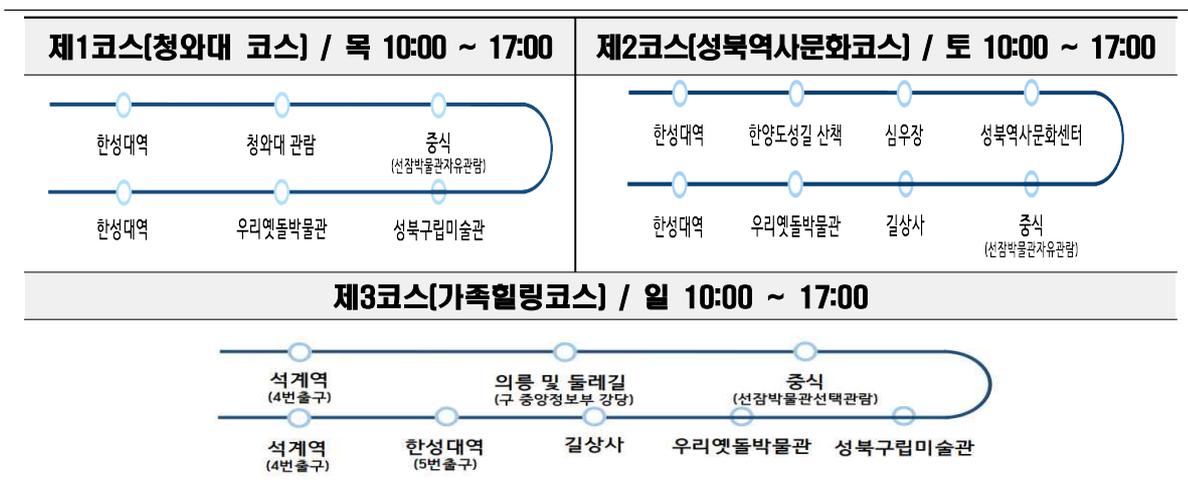
7)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기위해 제출 된 것으로,

○ 성북 시티투어버스는 성북의 주요 문화·예술·관광 거점을 잇는 테마형 버스로

- 운영기간 : 2023. 5 ~ 11. 10:00~17:00, 매주 3~4회
- 운영횟수 : 총 64회 이상 운영
- 운영방식 : 민간위탁 운영
- 운행요금 : 5,000 ~ 10,000원(입장료, 체험료 포함, 식사 미포함)
- 운영코스 : 테마별 코스 운영(3가지 정규코스 및 이벤트 코스)

- 2022년 운영 코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 2021, 2022년 추진 실적

구 분	2022	2021
운영일시	2022. 10. ~ 12.	2021. 8. ~ 11.
대 상	성북구민, 내·외국인 관광객(사전예약제)	
운영형태	성북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테마형 투어버스	
	28인승 우등, 45인승 대형버스	25인승 버스
요 금	5,000원(입장료, 여행자보험 포함)	1,000원(체험비 포함, 입장료 별도)
운영코스	3코스 운영	5코스 운영
소요예산	56,287천원	200,000천원
운영결과	총 29회, 888명 참여	총 75회, 648명 참여
운영업체	(주)로망스투어	(주)아트버스킹

- 사업대상 : 성북구 관광객(내·외국인)

- 위탁비용 : 1억1,700만원

○ 본 동의안은 시티투어버스를 통한 성북의 역사·문화·예술·관광 자원 연계 및 홍보를 통해 도심형 자율여행,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테마 여행 등 다양한 성북형 문화상품으로 모델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하는 것으로,

○ 기 실시된 2021년, 2022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 2021년 : 참여 만족도 97.1%, 재참여 의사 85.5%

- 2022년 : 참여 만족도 94.0%, 재참여 의사 82%로

대체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홍보, 비용, 투어 내용, 이동의 편리성, 음식 점 등에 대한 평이 좋았었음.

- 이에 구민과 관광객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반한 문화 상품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운영 주체가 구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통해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사료되며, 구청장이 제출한 2023 성북 시티투어 버스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3월 31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3. 17. 정해숙 의원 외 8명 발의(의안번호 108호)

나. 회부일자: 2023. 3. 20.

다. 상정일자: 제2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3. 27.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해숙 의원)

가. 제안이유

우리구의 여러 공식 홈페이지 중 이용률이 저조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관리하도록 홈페이지 폐기 조항을 조례에 추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홈페이지 폐기(안 제3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의 여러 공식 홈페이지 중 이용률이 저조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홈페이지에 대한 폐기 조항을 조례

에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7조(홈페이지의 폐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집행부에서는 이미 장애인, 어르신 등의 홈페이지에 대한 폐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성북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는 별도 운영되었으나 구 홈페이지로 이관하여 폐기 된 바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홈페이지의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심사가결」

가. 수정이유 : 자구수정(조문변경 및 신설)

나. 수정내용

제37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56조제2항”을 “제24조”로, “및 콘텐츠 저작권 등 정보의”를 “등의”로 한다.

제38조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9
----------	--------

제안 연월일: 2023년 3월 27일
제안자: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 자구수정(조문변경 및 신설)

2. 주요내용

제37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56조제2항” 을 “제24조” 로, “ 및 콘텐츠 저작권 등 정보의” 를 “등의” 로 한다.
제38조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로 수정.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56조제2항”을 “제24조”로, “및
콘텐츠 저작권 등 정보의”를 “등의”로 한다.

제38조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7조(홈페이지의 폐기)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및 콘텐츠 이관 시 「전자정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 저작권 등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3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p>	<p>제37조(홈페이지의 폐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제24조----- ----- 등의 ----- ----- -----.</p> <p>제3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p>